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61
----------	-------

발의연월일 : 2025. 6. 25.

발 의 자 : 전종덕 · 차규근 · 용혜인
문대림 · 송옥주 · 한창민
정태호 · 이수진 · 서미화
전진숙 · 윤종오 · 정혜경
손 솔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수업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 야간수업 · 계절수업 · 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장실습은 학칙에 따라 6주 이내의 단기 현장실습과 8개월의 장기 현장실습으로 운영됨.

그런데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매년 현장실습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현장실습 중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2022년에 이어 2025년에 또다시 발생하였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나.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1항 신설).
- 다. 실습장의 대표는 현장실습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 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 진행 전에 실습장의 대표와 현장실습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 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협약 이행과 현장실습 운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현장실습 협약)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농장 등의 대표(이하 “실습장 대표”라 한다)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하 “현장실습 학생”이라 한다)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실습장 대표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이행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현장실습 학생의 보호)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학생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실습장 대표는 현장실습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실습장 대표와 현장실습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현장실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실습장 대표는 현장실습 진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실시 전 농기계 등 관련 설비의 안전점검
2.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비 지급
3. 현장실습 학생의 과로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4. 그 밖에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의4(현장실습 실태조사)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협약 이행과 현장실습 운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실습장의 대표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시기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현장실습 협약)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농장 등의 대표(이하 “실습장 대표”라 한다)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하 “현장실습 학생”이라 한다)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 <u>② 실습장 대표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u> <u>③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이행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6조의3(현장실습 학생의 보호)</u> <u>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u>

현장실습 학생의 손해 및 배상 책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실습장 대표는 현장실습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실습장 대표와 현장실습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현장실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실습장 대표는 현장실습 진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실시 전 농기계 등 관련 설비의 안전점검

<신 설>

2.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보호장비 지급

3. 현장실습 학생의 과로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4. 그 밖에 현장실습 학생의 안
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의4(현장실습 실태조사)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
실습 협약 이행과 현장실습 운
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
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실습장의 대표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시기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